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3일,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고, 한·중 간 어업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해당 수역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지역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시설 설치에 한국 어민들의 조업권을 침해하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

민국 정부가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결의안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등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행위가 국가 간 경계획정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이고,

중국의 구조물들이 우리 어선의 항행과 조업에 위협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에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결의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주문 1은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가 해양 관할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규탄하며, 중국 정부에 “즉각 철거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려는 것이고,

주문 2·3은 정부가 중국의 무단 시설물 설치로 인한 해양 분쟁과 어업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기 해양조사 강화, 비례 대응 조치, 해양조사선 운용 등 “상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잠정조치 수역내에서 우리 어선의 항해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간의 어업질

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주문 4는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려는 것임.

특히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양주권을 명확히 하고,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서해에서의 구조물 설치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해당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어로 활동 방해 등이 확대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의 자제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가 있고, 중국이 서해에 최대 12기의 구조물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의의가 있어 보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6~2030년을 목표로 한 신규 해양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담 해양조사선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으로, 결의안은 이러한 조사 활동과 조사선 건조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결의안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5. 심사결과

원안가결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의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주 문

서해는 한·중 간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서해에서의 어업활동을 규율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종 경계확정을 하기 전까지 일방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이를 향후 한·중 간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위협할 행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양식시설 등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구조물이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중국의 무단 시설물 설치 행위를 방지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해양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권 침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감시할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양식시설 등의 구조물 비례조치, 전담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용 등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상쇄시킬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공론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한·중 간 어업 질서를 해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과 해양 자원 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우리 어업인의 권익 보장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며, 한·중 간 어업 협력 질서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초당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고, 한·중 간 어업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해당 수역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지역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시설 설치에 한국 어민들의 조업권을 침해하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